

의안번호	제 595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4월 일 (제355회)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4월 12일

#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5
----------	-----

발의연월일 : 2017년 4월 12일

발 의 자 : 박봉순, 김학철, 연철흠,  
박한범, 이언구, 최병윤,  
이종욱

##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2.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 필요 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요청
-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요조사, 국제회의·전시회 개최, 국내외 홍보
  - 해외 전시회 참가, 전문인력 양성, 재정적 지원
  -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제휴, 사업의 공동 추진·협력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필요경기 지원

- 전담기구 설치·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마이스산업 육성업무 수행 전담지구 설치·지정, 예산 지원
  - 전담기구에 사업 일부의 위탁 가능, 필요경비 지원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라. 입법예고 : 2017. 4. 6 ~ 4. 11(5일간)

##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북도 마이스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마이스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 산업” (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Exhibition)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회의 및 전시사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⑧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 ⑩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및 제21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한 경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발췌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7. “국제회의복합지구“란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 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도시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재정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 □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 발전 기본 방향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2.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계획
2. 제11조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3.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8조(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가. 명 칭 :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 나. 주요사업 :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 다. 추진근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에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유치·개최하는 기관·단체에 지원금(인센티브) 지원

## 3. 관련조문

- 안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6.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에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유치·개최하는 기관·단체에 지원금 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충북의 마이스산업 여건 및 현황을 감안하여 비용 추계
- 다. 추 계 결 과 : '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5억 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계
세 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국 비 도 비 기타(사업수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사 업 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지방세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5.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장 박 중 근